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9가합534817, 2020가합546083(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나2013931, 2022나2013948(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19가합534817, 2020가합54608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하

담당변호사 김동하, 오승민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3. E

4. F

5. G

6. H

피고 1,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창영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G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원고의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E, F,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E, F, G, H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 E,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겸 망 D의 소송승계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F, G, H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1. 피고 B 주식회사는

가. 피고 E, 망 D, 피고 F, G에게

1)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12673.11,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27234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2)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27235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피고 H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에 관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88분의 6에 관하여,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

2. 피고 G는 피고 E, 망 D, 피고 F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88분의 9에 관하여,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88분의 6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3~6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에 관하여,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

3. 원고에게,

가. 망 D는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12673.11에 관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공유자지분 88분의 9에 관하여,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에 관하여 각 2003. 11.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E, H, F, G는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에 관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88분의 6에 관하여,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2003. 11.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1. 아래 기재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가. 아래 각 토지의 망 D,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에 관하여 2017. 9. 8. 위 피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12673.11,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

② 같은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나. 아래 각 토지의 피고 H의 각 공유자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와 피고 B 주식회사가 2017. 8. 16. 체결한 매매계약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

②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88분의 6

③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다. 아래 각 토지의 피고 E, 망 D, 피고 F의 각 공유자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과 피고 G가 2017. 9. 8. 체결한 매매계약

①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88분의 9,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88분의 6

② 같은 목록 3~6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상회복으로,

가. 피고 E, 망 D, 피고 F, G에게,

1)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12673.11,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27234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2)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피고 E, F, G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27235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

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피고 H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공유자지분 88분의 6,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

3. 피고 G는 원상회복으로 피고 E, 망 D, 피고 F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공유자지분 88분의 9,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88분의 6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고,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3~6항 기재 토지 중 망 D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피고 E, F의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

4. 원고에게, 망 D는 126,684,545원, 피고 E, H, F, G는 각 84,456,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0.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I과 J,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 1) J은 1999. 3. 2. I과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1~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7필지’라고 한다) 중 I의 지분(258,000평) 전부를 대금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J은 같은 날 I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490,000,000원은 1999. 5. 2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2) J은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9. 6. 1. I에게 1999. 7. 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3) J은 1999. 11. 1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I의 지분 중 100,000평(이하 ‘이 사건 100,000평’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J은 매도인란에 ‘I의 대리인 J’, 매수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대금은 4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60,000,000원은 1999. 11.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4) 피고 C은 J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J은 1999. 11. 23. I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로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과 이에 관한 소송경과

- 1) 원고와 K은 1999. 11. 30.경부터 1999. 12. 24.경까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투자하면 월 22%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투자금으로 원고는 합계 40,600,000원을, K은 합계 124,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위 투자금을 유용하였다.
- 2) 주식회사 L에 투자한 채권자들과 피고 C 사이에 투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K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채권자들 중 한 명인 M을 내세워 피고 C과 협상을 하였다.
- 3) 피고 C은 2000. 1. 29. M과 사이에 피고 C이 J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모든 권리를 M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K은 I, J, 피고 C을 상대로, M이 원고와 K을 대리하여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I은 J에게, J은 피고 C에게, 피고 C은 원고와 K에게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05. 5. 20. M이 원고와 K을 대리하여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K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6112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K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06. 6. 7. 피고 C이 채권단 전체를 대표하는 M에게 채권단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K에게 직접 이 사건 100,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K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나46266호)을 선고하였다.

다. N의 사망과 이 사건 7필지 중 I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N은 2011. 6. 2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망 D(상속지분 3/11)와 자녀들인 피고 E, H, F, G(상속지분 각 2/11)가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이하 망 D와 피고 E, H, F, G를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

2) 피고 상속인들은 I을 상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상속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7필지에 관한 I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3. 19. 피고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492호)을 선고하였다.

3) 피고 상속인들은 2016. 8. 25. I을 피공탁자로 하여 230,000,000원을 공탁하고, 2016. 8. 26. 이 사건 7필지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아래 라.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7. 14.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2388950분의 350951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위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I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피고 상속인들은 I을 상대로 매매대금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8.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868호)을 받았다.

5) 망 D와 피고 E, F, G는 2017. 9.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3 매매계약 목록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3. 피고 B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 H는 2017. 8. 16. 피고 B와 사이에 별지3 매매계약 목록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5. 피고 B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망 D, 피고 E, F는 2017. 9. 8. 피고 G와 사이에 별지3 매매계약 목록 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8. 피고 G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망 D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5. 1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E, H, F, G가 각 상속지분 1/4의 비율로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C은 I을 상대로, 피고 C이 I의 대리인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2388950분의 350951 지분(이 사건 100,000평을 의미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16. 승소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3345호)을 받았다.

2) 피고 C은 2015. 7. 14.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2388950분의 350951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O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15.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M을 상대로, 피고 C이 이 사건 100,000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에 따라 이를 M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O에게 이전하여 M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M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100,000평의 시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법원은 2020. 6. 4. ‘M은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에게 그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가합30061호,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판결은 2020.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100,000평(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2388950분의 350951 지분)의 2017. 11. 30. 기준 시가는 826,445,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 22, 26 내지 28, 30, 32, 34, 35호증, 을가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과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K은 J에 대하여 184,527,5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와 K은 2003. 11. 14. J과 사이에 위 채권을 2003.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J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J이 I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155,000평(이하 ‘이 사건 155,000평’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K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K은 J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 155,000평을 피고 B과 피고 G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였고, 그 이중양도에 피고 B과 피고 G가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이중양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 B과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55,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J이 이 사건 155,000평을 원고와 K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방법으로 부동산양도양수각서 사본(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고 한다), 증인 O의 증언 등을 제출하였다.

2) 피고 B과 피고 상속인들은 이 사건 양도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P의 필적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각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J은 2003. 11. 14. 원고와 K에게 ‘차용금 184,527,500원을 2003. 11. 30.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J이 Q(R)로부터 매수한 수원시 권선구 S, T, U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와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을가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비교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다. 이 사건 양도각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이 다를 뿐이지 이 사건 비교각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비교각서와 이 사건 양도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② 감정인은 이 사건 양도각서와 이 사건 비교각서를 대조하여 비교한 후, 이 사건 양도각서 하단에 기재된 필적(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원시 권선구 V)과 이 사건 비교각서 하단에 기재된 필적(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수원시 권선구 V)은 하나의 문서에서 복사(複寫)되어 이전(移轉)된 필적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양도각서 하단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비교각서 하단에 날인된 인영 역시 하나의 문서에서 복사(複寫)되어 이전(移轉)된 인영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양도각서와 이 사건 비교각서 각 하단의 필적(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분)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글자 사이의 간격만이 다를 뿐 복사 및 이전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다분한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사본만을 제출하였고, 그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각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다음으로 증인 O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J이 원고에게 이 사건 155,000평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을 W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O는 2017년경에서야 원고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양도각서가 작성될 당시의 경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증언의 내용 역시 W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그 외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J이 원고와 K에게 이 사건 155,000평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J이 원고와 K에게 이 사건 155,000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155,000평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B과 피고 G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고, 피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155,000평에 관하여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귀착된다.

3. 피고 B과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J은 원고에 대하여 464,51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는데, J의 사망으로 망 D는 126,684,545원(= 464,510,000원 × 3/11), 피고 E, H, F, G는 각 84,456,363원(= 464,510,000원 × 2/11)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155,000평에 관한 이중양도에 피고 B과 피고 G가 적극 가담하지 않아 그 이중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상속인들의 이중양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155,000평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그 가액 상당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금채무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상속인들은 이 사건 155,000평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55,000평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B과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의 성립 여부

1) 인정되는 채권

① 갑 제11, 12, 16,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K이 2001. 4. 5.경부터 2002. 7. 9.경까지 23회에 걸쳐 J에게 합계 64,510,000원을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분할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K은 2003. 2. 28. J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법원은 2004. 9. 23. 'J이 원고와 K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J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3고단4460, 2004고단2561(병합), 2004고단2979(병합)]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4. 7. 7. K으로부터 K의 J에 대한 금전채권 전부를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은 J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J에 대하여 64,51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20,000,000원의 양수금채권 합계 84,51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위 64,510,000원의 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달리 이를 대여금채권으로 볼 증거는 없다).

② 한편,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2003. 11. 14. 원고와 K에게 차용금 184,527,500원을 2003.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14. 당시 J에 대하여 184,527,5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채권

① 원고는 2003. 2. 28. J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2. 11.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03. 2. 28. W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J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J을 고소하였으나, J은 위 유죄판결에서 'J은 2003. 2. 28.경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W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J에게 직접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는, 원고와 K이 2003. 11. 14. J과 사이에 'J이 2003. 11. 30.까지 J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230,000,000원을 원고와 K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 사건 양도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J이 원고에 대하여 2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J이 원고와 K에게 이 사건 155,000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원고의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상속인들이 이 사건 155,000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중양도를 전제로 하여 피고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B과 피고 상속인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2. 7. 9.경과 K의 J에 대한 금전대여일인 2003. 2. 28.경 및 원고의 J에 대한 대여금 184,527,500원의 약정변제일인 2003. 11. 30.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2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들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주장과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2000. 1. 29. M과 사이에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2015. 7. 14.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같은 날 O에게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100,000평의 2017. 11. 30. 기준 시가는 826,445,000원인 사실, 원고가 M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38,000,000원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 C이 O에게 이 사건 100,0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100,000평 양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 C의 M에 대한

이 사건 100,000평에 관한 권리이전의무는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M에게 발생한 이 사건 100,000평의 시가 826,445,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M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338,000,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3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9.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①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②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③ ㉠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 원고의 피고 E, F,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 원고의 피고 B과 피고 E, F, G, H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최석진, 판사 강동원

별지1

부동산 목록

1. 공주시 X 임야 2250272㎡(약 681,900평)
2. 공주시 Y 임야 233㎡(약 70.6평)
3. 공주시 Z 임야 1071㎡(약 324.55평)
4. 공주시 AA 임야 356㎡(약 107.87평)
5. 공주시 AB 임야 558㎡(약 169.09평)
6. 공주시 AC 임야 1021㎡(약 309.39평)
7. 공주시 AD 임야 66250㎡(약 20,075.75평)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1. 땅 D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12673.11

나.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공유자지분 88분의 9

다.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10547967

2. 피고 E, H, F, G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각 210227.6분의 8448.74

나. 같은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88분의 6

다. 같은 목록 3~7항 기재 토지 중 각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별지3

매매계약 목록

1. 피고 E, 망 D, 피고 F, G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 G의 별지2 공유자 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 G의 별지2 공유자 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2. 피고 H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라.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마. 별지1 부동산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바. 별지1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사.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8. 16.자 매매계약

3. 피고 E, 망 D, 피고 F와 피고 G 사이의 매매계약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라. 별지1 부동산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마. 별지1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에 관한 2017. 9. 8.자 매매계약

별지4

소유권이전등기 목록

1. 피고 B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 G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27234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38019.33)
-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210227.6분의 8448.74)
-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88분의 6)
- 라.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 마.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

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바. 별지1 부동산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사. 별지1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아.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D, F, G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3. 제 27235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31643901)

자. 별지1 부동산 목록 7항 기재 토지 중 피고 H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1. 15. 제999호로 접수된 2017.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7031978)

2. 피고 G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

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G의 공유자지분 88분의 21)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9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G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24611923)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4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8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G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24611923)

라. 별지1 부동산 목록 5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8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G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24611923)

마. 별지1 부동산 목록 6항 기재 토지 중 피고 E, 망 D, 피고 F의 별지2 공유자지분 목록 기재 각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9. 18. 제28178호로 접수된 201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G의 공유자지분 105113800분의 24611923)

